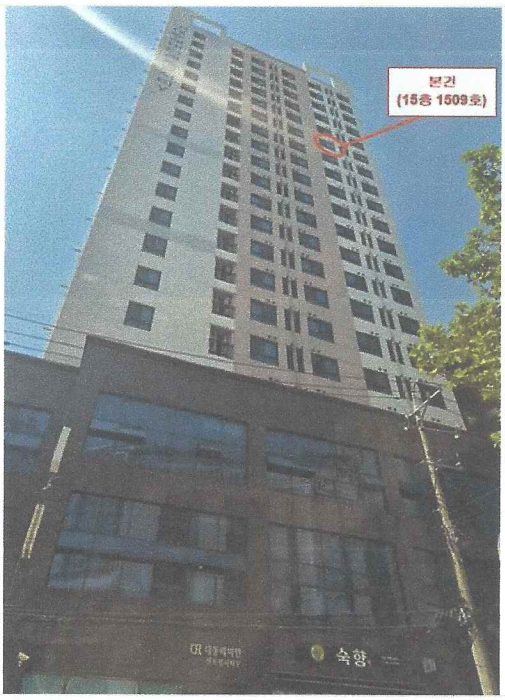
# 감 정 평 가 서

| | |
|---|---|
| 건 명 | 황의순 외 1명 소유물건(2026타경10619) |
| 의 뢰 인 |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선의 |
| 감정서번호 | WS260424-01 |





우 성 감 정 평 가 사 사 무 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3, 907호(연산동,부산은행 연산동금융센터)
TEL. 051-851-5557 FAX. 051-851-5547



우성감정평가사 사무소
WOOSUNG Appraisal Co.

#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문 양 환 

| 감정평가액 | 일억이천구백만원정(₩129,000,000.-) | | | |
|---|---|---|---|---|
| 의 뢰 인 | 부산지방법원<br>사법보좌관 김선의 | 감정평가<br>목 적 | 법원경매 | |
| 제 출 처 | 부산지방법원 경매4계 | 기준가치 | 시장가치 | |
| 소 유 자<br>(대상업체명) | 황의순 외 1명<br>(2026타경10619) | 감정평가<br>조 건 | - | |
| 목록표시<br>근 거 | 귀 제시목록 | 기준시점 | 조 사 기 간 | 작 성 일 |
| 기 타<br>참고사항 | - | 2026.04.27 | 2026.04.27 | 2026.04.29 |

| 감정평가내용 | 공부(公簿)(의뢰) | | 사 정 | | 감 정 평 가 액 | |
|---|---|---|---|---|---|---|
| | 종 류 | 면적(㎡) 또는 수량 | 종 류 | 면적(㎡) 또는 수량 | 단 가 | 금 액 |
| | 구분건물 | 1세대<br>이 | 구분건물 | 1세대<br>하 | -<br>여<br>백 | 129,000,000 |
| | 합 계 | | | | | ₩129,000,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우성감정평가사 사무소
WOOSUNG Appraisal Co.

#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 일련번호 | 소재지 | 지 번 | 지 목 및 용 도 | 용도지역 및 구 조 | 면 적 (㎡) 공 부 | 면 적 (㎡) 사 정 | 감정평가액 | 비 고 |
|---|---|---|---|---|---|---|---|---|
| | 부산광역시<br>부산진구<br>범천동<br><br>대동레미안<br>센트럴시티5<br><br>[도로명주소]<br>부산광역시<br>부산진구<br>범일로192번길<br>10 | 849-2 | 공동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br>평스라브지붕<br>20층<br><br>지2층<br>지1층<br>1층<br>2,3층<br>4층<br>5~20층 | <br><br><br><br>782.81<br>944.105<br>598.39<br>각 778.09<br>619.625<br>각 608.795 | | | |
| 1 | 동소 | 849-2 | 대 | | 1,252.6 | | | |
| (1) | | | 공동주택 | (내)<br>철근콘크리트구조<br>제15층 제1509호 | 22.8892 | 22.8892 | 129,000,000 | 비준가액<br>집합건축물<br>대장상공용<br>면적포함<br>:41.082㎡ |
| | | | | | 3.58 | | | |
| | | | | 1소유권대지권 | 1,252.6x------<br>1,252.6 | 3.58 | | |
| | | | | | | **토지·건물** | **배분내역** | |
| | | | | | | **토 지 :** | **38,700,000** | |
| | | | | | | **건 물 :** | **90,300,000** | |
| | **합 계** | | | | | | **₩129,000,000.-** | |
| | | | 이 | 하 | 여 | 백 |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Ⅰ. 감정평가의 개요

###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부산도시철도 1호선 범내골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5 15층 1509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부동산 강제경매목적의 감정평가임.

### 2. 대상물건의 개요

| 물건 소재지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49-2<br>[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192번길 10 | | | | | |
|---|---|---|---|---|---|---|---|
| 건물명·동·호수 | | 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5 제15층 제1509호 | | | | | |
| 건물의 구조 및 용도 | | 철근콘크리트구조<br>평스라브지붕<br>20층 공동주택 | | | 건물의 사용승인일 | 2019.11.05 | |
| 구 분 | | 대지권 (㎡) | 전유 면적 (㎡) | 공용면적 (㎡) | 공부면적 (전유+공용) (㎡) | 용 도 | |
| 기호 | 층·호수 | | | | | 공부 | 현황 |
| 1 | 제15층 제1509호 | 3.58 | 22.8892 | 18.1928 | 41.082 | 공동주택 (아파트) | 공동주택 (아파트) |

### 3. 감정평가의 근거

본건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실무기준" 등 감정평가와 관련된 제반 법규 및 규칙, 기준과 감정평가의 일반이론 등에 따라 평가하였음.

### 4.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 (1) 기준가치

1)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①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였음.

**(2) 감정평가조건**

해당사항 없음.

## 5.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실시기간

(1)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며,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②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6년 04월 27일**로 하였음.

(2) 본건은 대상물건 소재지에서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지조사 실시일은 2026년 04월 27일임.

## 6. 감정평가방법

**(1) 감정평가의 방법에 대한 검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평가방법에 의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장가치의 도출이 요구되며 이에 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1) “원가법”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며,

2) “공시지가기준법”은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며,

3) “거래사례비교법”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며,

4) “수익환원법”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2)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위치, 주위환경, 교통사정 등 입지조건, 건물의 구조, 용재, 시공정도, 부대설비, 층별·위치별·향별 효용도 등 가치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인과 인근 동류형 및 유사물건의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②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주된 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으로 결정하되, 인근 동류형 및 유사물건의 가격수준, 평가전례, 거래사례 등 참고가격 자료를 통하여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 7. 그 밖의 사항

1)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를 기준하여 분양 및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토지와 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법원의 요청에 의거 대상물건의 평가액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감정평가명세표상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2) 본건은 실지조사 시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내부 확인이 곤란하여 관련 공부 및 외부관찰에 의하여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므로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본건 내부의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한 재확인이 요망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Ⅱ.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1. 감정평가 방법의 적용

본건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함.

### 2. 인근 거래사례와 거래사례의 선정

1) 인근 거래사례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849-2 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5 (단가: 원/㎡, 거래금액: 원)

| 기호 | 층·호수 | 전유면적(㎡) | 거래금액 | 전유면적당 단가 | 거래시점 | 비 고 |
|---|---|---|---|---|---|---|
| ㄱ 선정 | 9층 902호 | 44.1671 | 245,000,000 | 5,547,115 | 2025.05.08 | 아파트 |
| ㄴ | 8층 803호 | 53.0631 | 265,000,000 | 4,994,054 | 2023.03.21 | 아파트 |
| ㄷ | 8층 802호 | 44.1671 | 270,000,000 | 6,113,147 | 2022.05.11 | 아파트 |

2) 거래사례의 선정

본건 구분건물의 평가에 적용할 거래사례는 평가대상 구분건물과 제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거래사례인 기호(ㄱ)을 비교거래사례로 선정하였음.

### 3. 사정보정

1) 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상기 선정된 거래사례는 현장조사시 조사된 인근지역내의 유사물건과 부합하고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볼 때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1.000)

**4. 시점수정**

1) 시점수정이란 감정평가액 산정에 있어서 거래사례의 거래시점과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이 시간적으로 불일치하여 가격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거래가액을 기준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함.

2) 본건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유형별 매매가격지수 중 본건과 물적 특성 및 지리적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파트 매매 가능지수'를 활용하여 시점수정치를 산정함.

3) 시점수정치의 산정

| 구 분 | 가격지수 |
|---|---|
| 거래사례의 거래시점 (2025.05.08.) 매매가격지수 | 100.5 |
| 대상물건의 기준시점 (2026.04.27.) 매매가격지수 | 100.1 |
| 시점수정치 : 기준시점 지수 / 거래시점 지수 | 100.1/100.5 ≒ 0.99602 |
| **시점수정치** | **0.99602**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5. 가치형성요인 비교 : 거래사례(ㄱ) 비교

| 구분 | 조건 | 항목 | 격차율 | 비고 |
|---|---|---|---|---|
| 외부요인 | 가로조건 | 가로의 폭 및 구조 등의 상태 등 | 1.00 | 대등함. |
| | 접근조건 | 도심과의 거리, 교통시설의 상태, 상가의 배치상태 등 | | |
| | | 공공 및 편익시설의 배치상태 | | |
| | 환경조건 | 기상조건, 자연환경, 사회환경, 획지의 상태 등 | | |
| | |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위험 및 혐오시설의 상태, 재해 및 공해발생의 위험도 | | |
| | 행정적조건 | 행정상의 규제정도 등 | | |
| | 기타조건 | 장래의 동향, 기타 등 | | |
| 건물요인 | 시공상태 | 전체 건물의 기초, 벽체의 방습, 방음, 단열 및 안정성 등 | 1.00 | 대등함. |
| | 설계,설비 구조 | 설계에 따른 구조상의 양부와 설비의 유무, 종류, 수준 등 | | |
| | 노후도 | 준공시점, 입주시점 등 실제경과연수 및 잔존내용연수 | | |
| | 공용시설 | 주차시설규모, 집회실, 현관시설, 놀이시설, 노인정 등 | | |
| | 규모 및 구성비 | 건물의 층수, 총세대수, 각 평형별 구성비 등 | | |
| | 건물용도 | 건물이 주상복합용인가 주거단일 용도인가와 현재 이용상태 등 | | |
| | 관리체계 | 관리체계 및 관리현황 유지 보수 체계 등 | | |
| 호별요인 | 평형별효용 | 사회적 인식 및 소유자의 선호도, 환가성, 동류집단의식 등 | 1.02 | 본건은 1509호, 거래사례는 902호로 향별효용 등에서 열세하나 층별효용 및 평형별효용 등에서 우세하여 종합적으로 우세함. |
| | 층별, 위치별, 향별 효용 | 일조, 채광의 정도, 조망, 압박감, 소음의 영향, 승강기 및 계단을 이용한 접근성, 난방 및 단열, 프라이버시 및 외부인 침입가능성, 혐오시설에서의 거리, 재해시 안전성 등 | | |
| | 전용율 |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의 합에 대한 전유면적의 비율 | | |
| | 부지에 대한 지분면적 | 대지권의 종류 및 크기 | | |
| | 관리상태 | 배관, 내부마감재 수선유지상태 등 | | |
| 기타요인 | 기타 |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 1.00 | 대등함. |
| **누계** | | | **1.020** |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상기 제요인을 참작하여 아래 산식에 의하여 시산가액을 산정함.

| 기호 | 거래사례 | 거래사례 단가(원/㎡) | 사정 보정 | 시점 수정 | 가치형성 요인 | 산출단가 (원/㎡) | 전유 면적(㎡) | 시산가액 (원) |
|---|---|---|---|---|---|---|---|---|
| 1 | ㄱ | 5,547,115 | 1.000 | 0.99602 | 1.020 | 5,635,538 | 22.8892 | 129,000,000 |

※ 본건 시산가액은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였음.

**7. 참고 : 그 밖의 사항**

**1) 인근 유사 구분건물의 가격수준**

(단가: 원/㎡)

| 이용상황 | 가격수준 (전유면적(㎡)당 단가) | 비 고 |
|---|---|---|
| 공동주택 (아파트) | 5,200,000 ~ 5,800,000 정도내외 호가 | 주변 탐문 등 |
| **가격수준에 관한 의견** | 본 건물은 공동주택 건물로서 단위면적(㎡)당 단가를 보면 대체로 위와 비슷한 가격수준을 보이고 있음. | |

**2) 인근의 감정평가전례**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849-2 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5

(단가: 원/㎡, 감정평가액: 원)

| 기호 | 층.호수 | 전유면적 (㎡) | 감정평가액 (원) | 전유 면적당 단가(원) | 기준시점 | 평가목적 |
|---|---|---|---|---|---|---|
| a | 13층 1311호 | 22.8892 | 128,000,000 | 5,592,157 | 2026.04.17 | 법원경매 |
| b | 7층 704호 | 27.4552 | 144,000,000 | 5,244,908 | 2026.04.16 | 법원경매 |
| c | 17층 1706호 | 21.2149 | 120,000,000 | 5,656,401 | 2026.04.15 | 법원경매 |

(자료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Ⅲ.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및 감정평가액

### 1.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상기 참고가격 자료(인근 동류형 및 유사물건의 가격수준, 평가전례, 거래사례 등)및 인근지역 부동산 경기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볼 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적정시되며, 또한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 2. 감정평가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49-2**

| 기호 | 층·호별 | 전유면적(㎡) | 감정평가액(원) | 단가(원/㎡) |
|---|---|---|---|---|
| 1 | 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5<br>제15층 제1509호 | 22.8892 | 129,000,000 | 5,635,845 |

단가(원/㎡) ≒ 감정평가액(원)/전유면적(㎡)

#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부산도시철도1호선 범내골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공동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부산도시철도 1호선 범내골역' 등이 소재하는 등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

**(3) 건물의 구조**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20층 건물 내 15층 1509호로서,
(사용승인일 2019.11.05)

외벽 : 치장석 붙임 및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
내부 및 내부마감재 등은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조사하지 못하였음.

**(4) 이용상태**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토지와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18m, 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기준높이 125m)<건축법>,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최고높이 150m)<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속함.

###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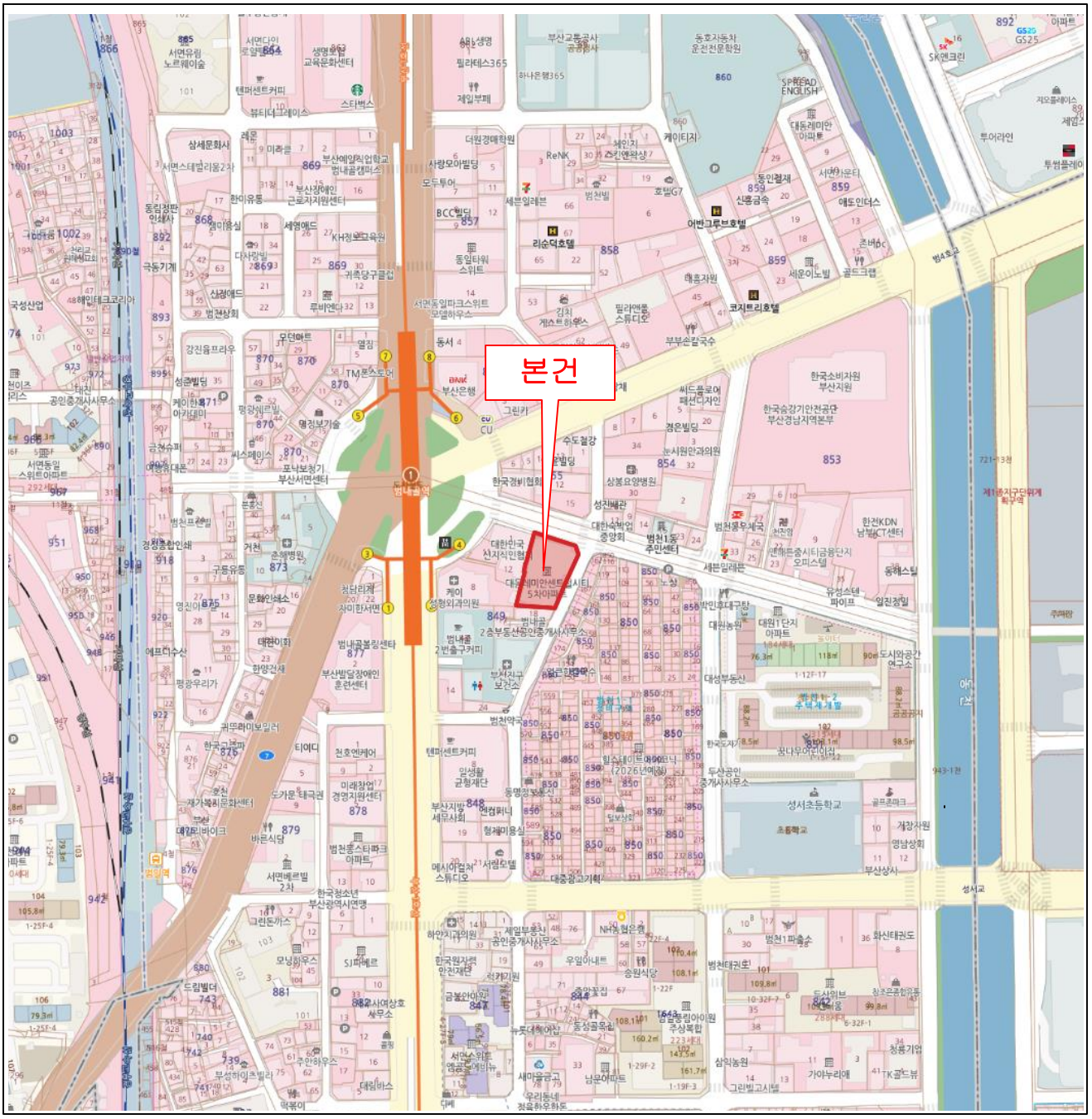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사항 : 없음.

# 광 역 위 치 도

N

S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49-2<br>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5 15층 1509호 |
|---|---|



# 상 세 위 치 도

N

S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49-2<br>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5 15층 1509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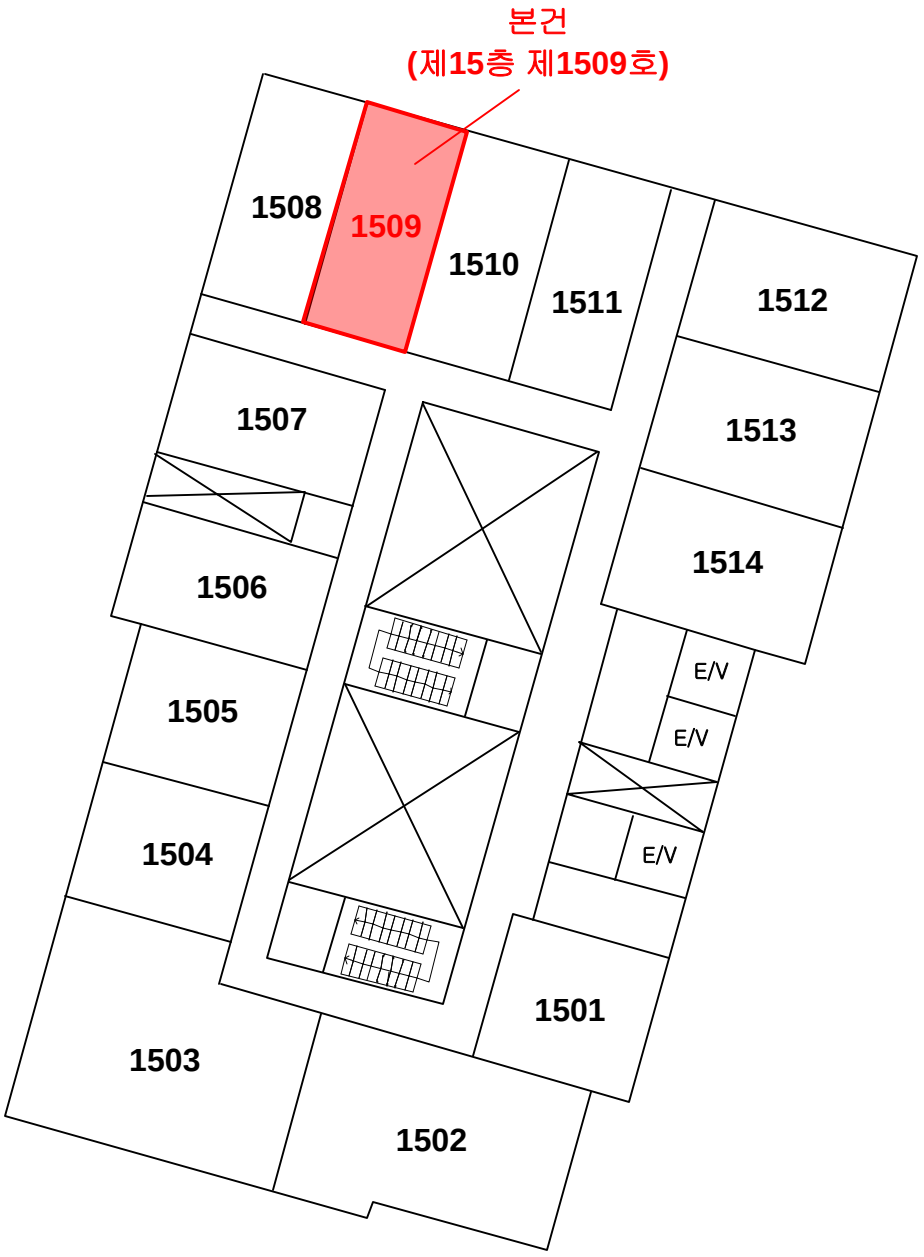
# 호 별 배 치 도

N

S

None Scale

## 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5 15층 호별배치도




본건
(15층 1509호)
숙향

(  )




1




(15 1509 )